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최 화 이 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a's Countermeasures Agains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최 화 이 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분 도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최 화 이 신

최화이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제 홍(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심 재 희(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분 도(인)

2020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구성	4
제3절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1. 선행연구	5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TBT협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및 배경	7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7
2. 무역기술장벽의 발생 배경	10
제2절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및 특성	12
1.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12
2. 무역기술장벽의 특성	13
제3장 WTO 체제하에서의 무역기술장벽	19
제1절 WTO TBT 협정	19
1. WTO TBT 협정 배경	19
2. WTO TBT 협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0
제2절 WTO TBT 협정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의 주요 내용	23
1. 기술규정 및 표준	23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성판정절차	24
3. 정보 및 기술지원	27
4. 공정관행규약	27
5. 분쟁해결	28
6. 개도국 우대	28
제4장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29
제1절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29
1.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주요 제도	29
2. 중국의 기술규제와 WTO TBT 협정의 비교	36
제2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	39
1. 기술규정 및 표준화 제도의 비효율성	39
2. 적합성평가의 불명확성	39
3. 투명성의 부족	40
4.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40
제3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42
1. 정부의 대응방안	42
2. 기업의 대응방안	47
3. 산업협회의 대응방안	50
제5장 요약 및 결론	52
제1절 요약 및 결론	52
제2절 논문의 한계 및 향후과제	55
참고문헌	56

<표 목 차>

<표 2-1> 무역기술장벽 유형 및 내용	12
<표 2-2> 표준의 유형과 내용	15
<표 2-3> 적합성평가활동의 유형과 특징	17
<표 3-1>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21
<표 4-1> 강제 인증 및 라벨링 제도	33
<표 4-2>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34
<표 4-3>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EU REACH의 비교	35

<그 립 목 차>

<그림 2-1> 연도별 WTO 회원국 전체 통보문 발행 건수	8
<그림 2-2>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10
<그림 4-1> 중국의 2002년~2014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30
<그림 4-2> 중국의 인증조직기구	31
<그림 4-3> CCC 인증 절차	32

ABSTRACT

A study on China's Countermeasures Agains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uai Xin, Cui

Advisor : Prof. Boon-Do, Jeong,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ue to the increasing size of trade and the expansion of free trade, customs barriers, which were traditional trade regulations, are gradually decreasing. The invisible non-tariff barriers are increasing in various forms as the independence of the domestic industry becomes difficult due to the increase in imports.

Due to the increased awareness of product quality assuranc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ach country has introduced various product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 and technical standards, increas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untries continue to develop the form of trade technology barriers to protect their industries.

The barriers to trade technology are increasing the effect of restrictions on China's export trade. In this situation, Chinese companies need to take measures to counter the trade technology barriers in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grow in the long term.

Therefore, it presented a countermeasure of the Chinese government, Chinese enterprises, and industry associations along wit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on how to solve obstacles and problems faced by China's trade technology barriers.

First, China's problems with the trade technology barrier are as follows.

First is the inefficiency of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ization systems.

Second, the uncertainty of conformity assessment. Third, lack of transparency. Fourth, in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prepa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econd is the use of specific trade issues. Third is the use of regionalism agreements. Fourth,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nd conformity determination procedures. Fifth, the use of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ixth, it is to foster trade experts and strengthen response skills. Seventh is the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trade technology barriers. Eighth, securing transparency and establishing management mechanisms.

The company's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raise awareness about standardization and to use th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Second is information exchange and collection for the use of the TBT agreement. Third, technology development and various market strategies are established. Four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ifth, it is overseas management through various means.

The industry association's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supervision of the industry association. Second, it is a uniform industry standard and technical regulation. Third, it is to collect information on technology barriers and provide countermeasures.

The purpose of the WTO TBT is to designate and establish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to prevent the deception of human, animals and plants, life, environment, safety, and decep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is intended for the positive aspects of development, but may be subjectively interpreted and used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that technical regulations do not interfere with the export of companies, it is important to quickly identify and respond to trade technology barrie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세계 무역통상환경은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및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 등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의 증가로 인해 자유무역의 장애물이었던 관세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무역의 크기 확대 및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전통적 무역규제였던 관세장벽이 점차 줄면서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자국 산업의 자립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다양한 형태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과거의 보호무역주의 수단은 주로 관세장벽이었으나 신보호무역주의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주고 이용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허가, 가격통제, 기술장벽, 통관절차, 정부보조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불확실성, 복잡성,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으로 인해 관세와는 다르게 국제간의 협상이 어려운 특성이 존재한다.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이 등장한 것은 오래지만 최근에 관심이 상승된 이유는 여러 차례 다자간무역협상으로 인하여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 반면에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관세효과보다 더욱 크며, 그 대상국에게 주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다.

국제통상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면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중이며, FTA 및 WTO체제의 확산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는 관세와는 반대로 비관세장벽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제무역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배경으로 전통적인 관세장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규제나 위생검역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또 다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제품의 품질 보증,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의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제품품질의 인증제도 및 기술표준을 도입하면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증가하였고, 각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무역기술장벽의 형식을 계속하여 개발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제무역에서 수입관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규정, 법령 등의 공포를 통해서 인증제도, 검사제도, 기술표준 등 외국으로부터 수출입한 상품에 대하여 엄격한 기술표준, 상품포장, 상표표준, 위생검사표준을 제정하여 수입 상품의 기술표준 제고 및 수입의 난이도 증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의 하나이다.

TBT협정에 의하면 WTO 회원국들은 정당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표준, 적합판정절차, 강제적인 기술규정 등을 도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타 회원국가들의 권리 침해 및 자유무역 증진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애는 되지 않아야 한다.

무역기술장벽은 전통적인 무역장벽보다 더욱 유연한 특징이 있으며, 관세보다 보호 효과가 큰 장점이 있으므로 현재 국제무역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무역기술장벽의 제거를 위하여 WTO TBT위원회에서 통보제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국가의 기술규정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하거나 통보시기 및 시행 시기의 시차가 촉박해 미리 예측 및 대처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 등의 특성상 수입국이 TBT 협정에서 규정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거 국내 상품과 수입품에 대하여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품질 안전 요건을 요구하더라도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 및 높은 기술요건 때문에 수출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나아가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급속하게 대외 무역이 발전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세계 제 1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아직도 수출 상품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기술수준보다 낮아서 무역기술장벽의 많은 충격을 받는 편이다.

중국 상무부에서 2009년에 발표한 ‘세계무역마찰연구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조사를 14년 연속 가장 많이 받았으며, 중국의 수출에 직면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기술성 무역장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지닌 국가로서,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한 무역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큰 국가로 손꼽힌다.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은 FTA 체결로 인해 낮아지고 있는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증가 및 분쟁을 야기 시킨다.

2. 연구의 목적

중국의 수출무역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 당면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TO TBT협정의 특성 및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중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장애요인 및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무역에 대한 TBT협정의 체결배경과 함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정부, 중국기업,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의존하였으며, 앞서 진행되어온 TBT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고, 관련부처의 정책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관련 단행도서와 함께 각종 연구기관들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및 조사 자료, 국내외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중국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TBT협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 장벽의 개념 및 배경을 살펴본 후 기술 장벽의 유형과 함께 특성을 서술하였다.

제3장은 WTO 체제하에서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내용으로 WTO TBT 협정 배경 및 목적과 적용범위, 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중국의 무역기술장벽현황을 연구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의 요약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백은영(2012)은 FTA 발효국들과의 기술무역수지 및 기술무역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국가와의 기술유형별, 산업별,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봄으로써 FTA 발효국과 기술무역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FTA 체결국과의 무역기술을 비추면서 무역기술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자국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관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에 대한 동기유발, 해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 전략, 개방화된 혁신체제로의 변화, 상대국에 대한 기술규제 동향의 신속한 파악, 새로운 선도 분야의 개척 및 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기술보유 산업의 육성을 들고 있다¹⁾.

서민교·김희준(2012)은 중국과의 FTA와 관련해 예상되는 무역기술장벽의 현안에 대하여 도출한 후 그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배타적인 중국의 기술규정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선진국들의 기술 규정을 참조해 중국 현지 생산업체들의 기술향상을 높여야 하고, 한국기업에서는 중국의 높아지는 환경규제에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세제혜택, 금융지원, 재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표준관련 제도완화·개선 및 표준관련 원천기술 확보 등을 들면서 중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²⁾.

박순애, 탁현우(2013)는 한-EU FTA 체결 이후 신규 표준정책의 도입이 자국 관련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새로운 기술기준에 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해 본 결과 EU의 기술기준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기술기준의 통합을 원하는 기업일수록 EU의 기준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밝혔다³⁾.

선아름, 나희량(2015)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인 전기전자 부분에서 WTO에 통보한 TBT 건수의 증가는 한국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 후 실제로 비관세장벽으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1) 백은영, “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통상정보학회, 2012, pp.1-23.
 2) 서민교·김희준, “한·중 FTA의 무역 기술 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통상정보학회, 2012, pp.491-516.
 3) 박순애·탁현우, “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서울행정학회, 제23권 제4호, 2013, pp.81-102.

밝혔다⁴⁾.

조현숙(2015)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WTO 특정무역안의 분석을 통해 국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법제를 이해하고 WTO 제기된 특정무역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규정과 표준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나아가 이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⁵⁾.

박주희(2016)는 중국의 TBT 정책, 제도, 주요사례 등을 토대로 중국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후 중국 TBT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하여 연구하였다⁶⁾.

류한얼·성열용(2017)은 한국의 對EU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파악한 후 EU 회원국 간의 TBT 완화조치가 對EU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對EU 최적 상호인정협정의 전략을 도출하였다⁷⁾.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특징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무역기술장벽의 정의, 기술무역과 관련된 관심사, 분류 기준별 현황·연도별 추이, 무역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술적인 연구가 주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WTO TBT협정의 특성 및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중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장애요인 및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무역에 대한 TBT협정의 체결배경과 함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정부, 중국기업,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4) 선아름, 나희량,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2015, pp.205-239.

5) 조현숙,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학논총」, 제4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15, pp.72-94.

6) 박주희,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5-65.

7) 류한얼·성열용(2017), “무역기술장벽과 한국의 대EU 투자 전략”, 산업연구원.

제2장 TBT협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및 배경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기술무역이란 국가들 간에 행해지는 기술이전, 기술서비스, 특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술 및 기술서비스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업적·국제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 자국의 기술개발 능력 확대 및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선진국의 경우 해외로의 판매 및 생산거점을 구성해 자국으로부터의 노하우 및 기술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난다⁸⁾.

교통수단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품의 이동은 국가의 단위를 넘어섰는데 반해, 기술규제와 같은 규제정책은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해당 국가의 정책방향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나 각 국가별로 기술규제는 경제적·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상이하게 제정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결국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자국의 규제와 수출국의 규제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이중규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FTA와 같은 양자, 혹은 다자 경제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양국의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상이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역상 장애요소를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라고 지칭한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각국이 처한 환경에 의한 각기 다른 기술규정(Technial Regulation), 표준(Standar), 적합성평가절차(CAP: Confrmity Assessment Procedure) 등을 채택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무역 상품의 이동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하며⁹⁾, 위생 및 검역 표준, 기술 표준, 상품 포장 및 특정한 제품이 기존에 설정된 기술 규정이나 표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결정짓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같은

8) 전주진, “FTA 시대 한·중 기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81.

9) 이석, “技術貿易障壁이 中國의 貿易에 미치는 影響 및 대응方案에 관한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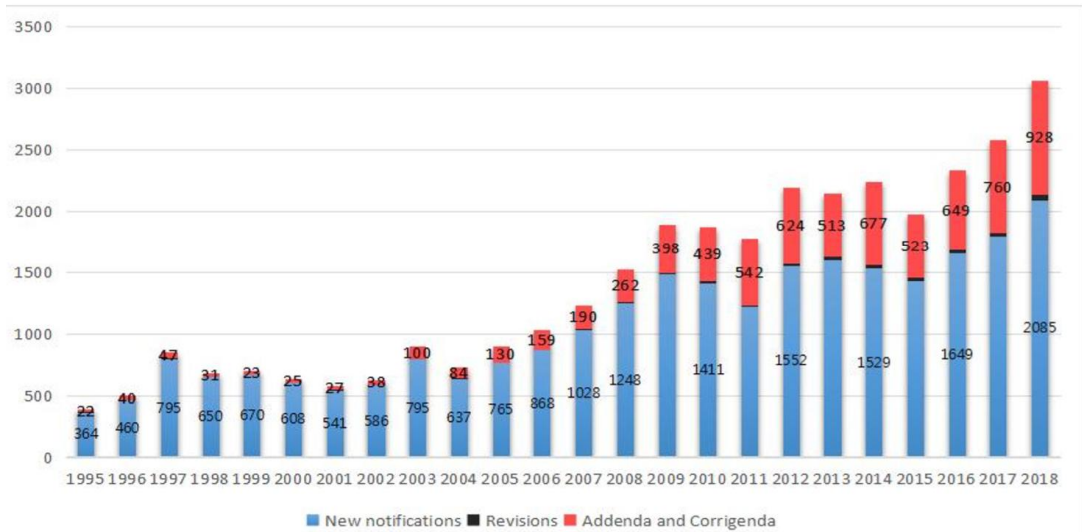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 요인들을 구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¹⁰⁾.

이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보건 위생, 환경보호,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규제규정이며, 검사 시스템에 의해서 표준으로 수입 제품의 기술적 요건을 개선하며, 수입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비관세장벽 조치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목적을 달성한다¹¹⁾.

WTO의 출범과 함께 발효된 TBT협정은 인간의 안전 및 보건, 환경보호, 국가의 안보,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과 건강 등 정당한 목적 외의 장벽은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비차별 원칙으로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다면 이를 채택하여야 하고,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회원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에 미리 통보함과 동시에 최소 60일은 의견제출 시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²⁾.

<그림 2-1> 연도별 WTO 회원국 전체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건수)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HS CODE를 통해 관세혜택 여부를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세규정

- 1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WTO 무역기술장벽, 2012.
- 11) 리위안루, “무역기술장벽 협정(TBT협정)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주요 선진국 완구 리콜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p.9-60.
- 12) 정민희, 무역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한-EU, 미국, 중국 FTA TBT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20-38.

과는 달리 기술규제는 다소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하여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BT 통보문의 증가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져 생명보호, 환경 등 좀 더 나은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³⁾.

WTO 회원국은 시행 중 또는 신규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의 수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이라 한다. STC는 각 회원국의 신규기술규제 통보 분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실행이 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관한 내용까지도 의제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 또한 WTO에 이의제기를 하는 STC건수의 급격한 증가를 보면,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에 관한 인식의 변화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이어져온 세계적인 저성장 및 경제둔화로 자국의 산업 보호와 함께 수입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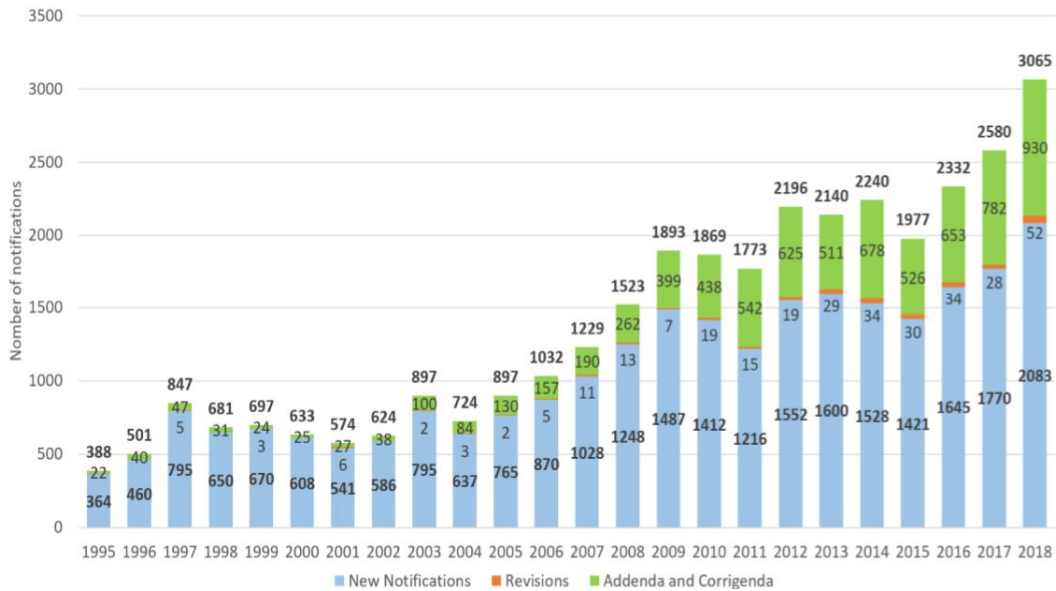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로 중국의 대외무역에 대해 구축된 TBT현황을 살펴보면 WTO의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상대국의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의 기술규제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규제 관련 WTO에 대한 통보문은 잠재적인 기술 장벽으로서 관련 동향의 파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WTO의 출범 초기 선진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개도국을 크게 앞질렀으나, 이후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선진국의 통보건수보다 많다. 이는 WTO TBT협정의 강화로 모든 회원국에 통보의무가 부여되고 개발도상국들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참여의 확대로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까닭도 있으나, 무역관련 기술규제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일반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⁵⁾.

<그림 2-2>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13) 김철수,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7, pp.197-213.

14) 김철수, 상계서, pp.197-213.

15) 손진걸, “외국의 기술 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53-54.



자료 : WTO, I-TIP.

2. 무역기술장벽의 발생 배경

GATT회원국들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골자로 해서 자유무역을 목표로 실질적으로 통상에 방해로 작용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자국의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여 왔고, 그로 인해 무역에 관한 관세장벽은 거의 대부분 제거되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은 관세장벽이 축소될수록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비관세장벽의 확대에 따른 부담뿐만 아니라 기술발달로 인해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질수록 각 수출국에 관한 기술규제, 규격, 제품의 라벨링, 적합성평가 절차 등과 같은 업무 등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을 비관세장벽의 일부인 기술 장벽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¹⁶⁾.

TBT조치들이 자유무역 증진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추고 국제적인 표준을 사용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TBT협정에 의거하여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¹⁷⁾.

16) 엽소령, “기술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4-78.

하지만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집행과 관리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에서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표준협정에서는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관의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표준협정의 적용과 관할 범위가 모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에 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 시작했다. 동경라운드에서 시작되었던 표준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TBT 협정으로 채택됨으로써 WTO협정의 주요 부분이 되었고, 다자간 협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TBT협정은 기존의 제품 자체에 대한 규제 및 표준에만 적용되었던 표준협정과 다르게 생산방법 및 관련 공정 등 최종제품이 만들어지는 방법에도 적용되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표준협정보다 더욱 다양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TBT협정은 표준협정에 비하여 적용대상 범위도 확대되었고,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활동, 자율적인 표준의 설명과 적용에까지 적용되었다. 이는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은 새로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TBT협정과 분리하였다.

상품규격의 표준화는 일반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기술적 대화 증대 및 시장 확대 효과를 가져다주고, 기술발달의 심화는 표준화 대상범위 확대 및 더욱 세분화된 표준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준화제도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상이한 발전 속도 및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국가 간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오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기술성제적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¹⁸⁾.

17) 오선영,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47권, 2014, p.496.

18) 엽소령, 전게서, pp.14-78.

제2절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및 특성

1.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각국의 상이한 표준, 인증절차, 검사절차, 기술규정 등이 중복적 차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하여 국가들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WTO에서 TBT 협정을 제정하였다. WTO TBT 협정에서는 포괄적인 원칙 및 회원국 간의 의무사항을 포함하며, 기술 규정 및 표준, 공식 접수처 운영, 인증제도, 개발도상국우대, 분쟁 해결 절차, 국제 표준의 강화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TBT협정이 무역기술장벽의 완화를 위하여 조화(harmoniz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 그리고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호인증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 방법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¹⁹⁾. 기술의 발전은 제품 및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관련 규제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제품이 주로 제품의 규격이나 성능과 같은 품질 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품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보건 등 삶의 길을 중요시함에 따라 기술규제 역시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무역기술장벽 유형 및 내용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사례
기술 규정	상이한 표준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공동체 회원국들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 - 동일국가내 동일제품에 대하여 일부 지방에서 수입금지 조치
	기술장벽의 사례	현지 조달비율의 계산에서 국내외 업체들간 산정방식의 차별적용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제품표준이 불일치하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불일치
	투명성 결여	수시로 표준변경 및 불충분한 사전 공시기간
	과다한 기술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국가에서 수입이 허용하는 상품에 대해 이들 국가들보다 엄격한 요건요구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획득절차
표준	민간기관에 의해 임의표준과 인증취득이 국내시장에서 판매요건으로 실질적인 강제성 부여	

19) 박주근, “WTO/TBT協定에서 標準의 調和와 透明性이 韓國貿易에 미치는 影響”,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2-28.

적합성 평가	과다시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마크를 획득하는데 과다시간 소요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검사지연
	중복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의 이원화(국내 및 국제적 인증취득 불인정) -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 획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 중복검사
	투명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적이지 못한 판정 - 검사기관의 결여로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국내업체에 의한 검사
	비용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 높은 검사비용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기를 상품자체에 하도록 요구 - 국내 조달비율표시를 요구함으로써 반수입적인 자국산 구매의욕 고취 (미국의 자동차) - 자국어로 표기의무 	

자료 : www.standard.go.kr(무역기술장벽정보)

2. 무역기술장벽의 특성

1) 기술규정(Technial Regultion)

기술규정은 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규격, 형태, 디자인, 포장방식, 상품부착방식, 성능 등의 상품의 특성이나 또는 생산방법, 관련 공정 등에 대한 용어, 기호, 포장, 라벨링 요구사항이 규정된 문서이며, 제도 및 법과 연계하여 정부의 주도로 개발하는 규정²⁰⁾으로서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한다.

기술규정은 상품, 생산방법,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포장 및 표시 등과 상표부착요건을 포함 및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규격이나 불필요한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상품 가격상승 유발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라벨링(labelling)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를 뜻하며, 이는 특정 물품에 차별이거나 통보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²¹⁾.

나아가 기술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므로 정부가 유일한 책임자가 되며, 이러한 규정은 정부에 의하여 규정이 되므로 공의적인 측면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20) 법률 규정에는 정부가 반포한 명령, 조례, 기술 규범, 지침, 결정, 준칙, 지시, 기호, 포장, 상표 요구, 전문 용어를 포함한다.

21) 선아름·나희량, 전게서, pp.205-239.

따라서 관련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인간과 관련된 분야에서부터 환경보호, 위생, 건강, 노동 안전, 기량, 지식 재산권, 에너지 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기술규정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활동 폭이 제한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이 억제된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기술규정을 수입상품에 대하여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또는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으로 간주된다. 수출 기업에게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적용해 원활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표준이나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아 재생산이나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EU와 같은 연합국가 내에 통일성 없는 표준제도, 다른 국가보다 너무 과도하게 기술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기술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국가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등에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조치가 식별가능한 상품이나 상품군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품이나 상품군이 조치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 둘째, 해당 조치는 상품의 특성 또는 그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품의 특성은 상품에 내재된 본래적인(instinct) 것이거나 관련된 것일 수 있으며 어떠한 특성이 상품에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성이 존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조치의 준수는 반드시 강제적이어야 한다²²⁾.

2) 표준(Standard)

표준의 경우 지침이나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이나 관련된 전문 용어 기호 포장, 규칙과 상품의 특성, 라벨링, 표지를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이며,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 및 준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 표준의 적용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승인절차가 복잡하며, 과다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민간 표준화 기구와 단체에서 표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준수 의무는 강제적이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 및 생산자 등 소비주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성을 띄게 된다. 정부의 강제 검사제도 운영 표준의 인용 또는 기술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출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장벽으로 변질된다. 따라서 표준을 기술규정으로 활용해 강제적으로 준수할 수

2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p.255.

있도록 법제화하거나 또는 수입품에 따른 수요가 소비자의 선호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을 때 실제적으로 표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규율의 필요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정부기관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적 기업에 의해서도 채택 및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규정의 조항들을 그대로 표준에 적용할 수는 없다²³⁾.

기술 표준의 특성과 기술 규정의 특성은 의무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나뉜다. 기술 표준은 표준화 분야에서 통합 및 조정되어야 하는 기술 문제에 따른 표준이다. 이는 일반적인 상품 유통의 준수만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 기술, 설계, 검사 및 기타 기술 작업의 기술적인 기초이다²⁴⁾.

WTO회원국은 관련된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 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나 지리적인 요인 또는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이 기술규정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외된다(TBT협정 제2.4조). 따라서 회원국은 국제표준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국가 고유표준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준은 역할에 따라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으로 구분된다.

<표 2-2> 표준의 유형과 내용

유형	정의	내용
측정표준	산업과 과학기술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당위나 측정량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측정 방법, 측정 시스템 또는 표준물질	국제단위계(SI)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의 크기 및 이들 간의 조합에 의한 것들
참조표준	측정데이터의 정확도 및 정보의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국가 사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인된 기초자료	인체치수, 치열구조, 고혈압기준, 과학기술데이터 등 데이터에 대한 표준
성문표준	인간이 자율적으로 또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제정하여 준용하는 문서화된 과학, 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	산업표준, IEC, ITU, ISO, 안전보건 등 기술문서화

자료 : 박동준·강인선, “WTO/TBT협정에 따른 기술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생산성논집, 제23권 제4호, 2009, p.3.

23) 이민아, “TBT협정과 환경 라벨링 제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1.

24) 何盛明. “財經大辭典：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0.

3) 적합성평가절차

적합성 평가는 기술규정 및 표준의 관련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술 규정과 표준의 대한 준수 여부, 그리고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수행, 평가 및 인증 등을 하는 직·간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²⁵⁾.

적합성 평가의 종류에는 제품의 건본(sampling), 시험 및 검사, 적합성의 평가·확인·보증절차, 등록·허가·승인절차 등을 포함한다. 적합성 평가 역시 적합성 평가 검사 절차로 인해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시장진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무역장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적합성평가가 장벽으로 작용되는 사유로는 중복적인 검사요구, 불필요한 검사절차, 검사 인력의 부족, 검사장비의 낙후 등의 문제로 인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무역기술장벽을 들 수 있다.

적합성 평가 절차에는 시스템 인증과 제품 인증이 포함된다. 시스템 인증은 제품이나 관리 시스템이 해당 표준에 대하여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 인증은 제품이 기술 규정이나 표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적합성판정은 지방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중앙 정부기관 등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적합성판정의 절차에 있어서 중국의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유럽의 CE(Community European), 일본의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등 특정 인증의 획득을 의무화한다거나, 상대국의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이 자국의 기술규정의 목적 달성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된다²⁶⁾. 중국의 경우 2003년 강제 인증제도 CCC를 도입하여 인증마크를 통일했고, CCC마크를 획득한 상품만을 중국내 수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⁷⁾.

적합성 평가의 절차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 기술 규칙, 표준에 의거 생산, 제품, 안전, 품질, 환경 및 전체 안전 시스템의 종합 감독, 검사 및 검사를 말한다. 적합성 평가와 관련되는 TBT로는 국내 또는 국제적 인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 (TBT협정 부속서 1의 3항)

26) 안주석,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8-58.

27) 김창로·용덕, “貿易上 技術障壁으로서의 標準에 대한 中小企業의 認證과 標準化 政策方向”, 한국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2008, p.6.

불인정하는 경우, 인증제도 이원화, 중복검사 강요, 경쟁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로 인한 투명성이 결여되는 형태, 높은 검사 비용과 과다 시간 소요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품 수출 시 상품 자체에 상표 표기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수출국의 언어만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에도 TBT에 포함된다. 특히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인해 생산 요소에 차별화가 생기게 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및 기술이 부족한 국가나 기업들에게는 행정적·비용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표 2-3> 적합성평가활동의 유형과 특징

활동유형	정의	특징
검 사 (inspection)	제품과 제품의 설계, 설비, 프로세스, 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특정한 요구조건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로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활동으로서 고도의 기술보다는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해 결정을 내리므로 상황에 따라서 결과의 변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곡물, 쌀, 철 광석 등과 같은 벌크화물에 대해서 간단한 기기 또는 게이지를 사용해 검사)
시험 (testing)	어떤 재료나 제품, 프로세스가 갖는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전문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 수행하는 측정과 관련	제품의 특정 품질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제시할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소재의 물리특성, 미생물학 특성, 화학조성, 강도에 대한 측정 등)
교 정 (calibration)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시험, 기기, 분석 등을 포함한 측정 기기 또는 시스템이 나타낸 측정값 및 측정표준에 의해서 제공된 값 사이의 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으로 시험 또는 측정기기가 측정값을 맞게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작업	시험 또는 측정기기가 맞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선결조건으로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고도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
인 증 (certification)	검증과정을 거쳐 어떤 제품, 프로세서 시스템, 인력이 특정요건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제3자가 증명서로서 발행하는 것.	제품의 안전 및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인증서는 사용되며,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3자가 제조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도 있음(특정제품에 관한 제품 인증서 발급이나 JIS, CE, KS 등과 같은 마크를 발행하는 것)
인 정 (accreditation)	검사, 교정, 인정, 시험 등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들이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제3자가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	객관성 및 공정성 필요

자료 : 박주근, 「WTO/TBT協定에서 標準의 調和와 透明性이 韓國貿易에 미치는 影響」,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28.

4) 라벨링(labeling)

라벨링 요건은 표시나 포장 등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의 선택이나 사용 방법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하는 기준이며, 상품명, 성능, 가격, 용량, 성분, 용도, 규격, 원산지, 재질, 사업자명, 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유효기간 등으로 구성되며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이 작성된다. 제조 년 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 처리기구 및 처리방법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는 특정된 생산요소에 따른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기술장벽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제3장 WTO 체제하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제1절 WTO TBT 협정

1. WTO TBT 협정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GATT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체결되었다. GATT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대우 원칙을 두면서 무역자유화에 다자원칙을 공고히 하였고, 협정 가입국에게만 적용이 되는 복수국간협정을 두면서 상품교역협정 이외의 부분까지도 규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케네디라운드에서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관세로 인한 수입 규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WTO 회원국들은 무역제한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도쿄 라운드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TBT 제도의 구체화와 규제수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결과, 무역과 기술규제와 관련되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서 ‘표준협정(Standard Code)’이 채택되었으며, 이 협정은 각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표준 조화를 위한 다자간 규범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협정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국제통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GATT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서비스·지적소유권·해외투자 등과 같은 새로운 의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게 되었다.

GATT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WTO 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었고, WT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거듭났다. WTO TBT 체제하에서는 중앙기관을 포함해 지방 및 비정부기관에게도 협정의 준수 의무를 부여했고,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까지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나아가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에 대하여 제품 생산 및 공정방법으로까지 확대했으며,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도 과거의 권고 수준을 벗어나서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과 같은 분쟁해결을 위한 강력한 체제로 전환했다²⁸⁾.

28) 국가기술표준원, “2016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2017, p.11.

2. WTO TBT 협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WTO TBT 협정은 협정의 기본적인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 전문과 15개 조문 그리고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조문들은 협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규정, 기술규정 및 표준,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정보 및 지원, 기구와 협의 및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규정 최종 조항 등과 관련하여 총 15조하을 담고 있다. 부속서로는 협정의 목적을 위한 용어 및 정의에 관한 부속서1, 기술 전문가단에 관한 부속서2, 표준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을 정하고 있는 부속서3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⁹⁾.

WTO TBT 협정은 국가안보, 인간의 보건이나 안전, 기만적 관행의 방지, 건강 및 환경보호, 동식물의 생명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규제를 방지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타 국가의 차별 수단이나 제한수단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협정을 규정하는 것이다.

WTO TBT 협정은 포장, 라벨링, 마킹 등을 포함하는 기술규정 및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하지 않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에 어려움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WTO TBT협정은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가 생산능률의 향상 및 국제무역의 원활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하여 회원국들이 표준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며, 표준화제도가 국제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게끔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의 기본목적은 다음과 같다³⁰⁾.

첫째, 인간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이다. 둘째, 동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이다. 셋째, 환경보호이다. 넷째, 기만적 관행의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도 정당화된다. 다섯째, 국제무역의 원활화에 기여한다.

29) 왕상한, “WTO 뉴라운드와 무역기술장벽”, 신론사, 2003, pp.44-45.

30) 왕상한, 상계서, pp.45-46.

<표 3-1>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관련 조항	내 용
무차별원칙	제21항 제5.2항	수입품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불필요한 무역장애 금지	제2.2항 제5.1항 제5.2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의 채택·적용 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을 것
국제표준 채택	제2.4항 제2.5항 제2.6항	국제표준을 채택하여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하고, 관련 국제표준을 따른 기술규정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동등성 및 상호인정	제2.7항 제6.1항 제6.3항	외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 목적에 부합 할 경우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 또한, 각자의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
투명성 확보	제2.9항 제5.6항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의견 제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회원국에 통보
정보 제공 및 질의처 운영	제10.1항 제11.3항	질의처를 설치하여 자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회원국 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

자료 : 권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한·EU, 한·중 FTA 비교연구 -전기·전자제품 유탄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pp.28-29.

기존의 GATT TBT협정이 협정가입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협정(PTA)이었던데 반하여 WTO TBT협정은 다자간협정(MTA)으로 모든 WTO회원국에게 적용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 관할토록 이관하였고, 공정 및 생산방법(Product Production Methods: PPMs)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과정도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³¹⁾. 아울러 공정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도 협정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중앙정부기관은 TBT 협정 준수 및 이행 책임이 있으며,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TBT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³²⁾.

WTO TBT 협정의 기본원칙은 첫째, 국제무역의 영향을 최소화, 불필요한 장애를 최소화하며, 둘째, 무차별 원칙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2가지 형식이 있다.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의 측면에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본국에서 생산된 제

31)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1, p.183.

32) TBT협정 제4.1조.

품 또는 그 밖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³³⁾. 셋째, 동등한 상호 이익 인식 원칙으로, 만약 다른 회원국의 기술법규는 자국의 기술법규와 같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이 법규들은 자국의 법규와 다르더라도 각 회원국들도 이 법규에 대한 자국 기술법규와 동등한 효력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³⁴⁾.

양대 비차별 원칙으로 불리는 내국민대우원칙³⁵⁾ 및 최혜국대우원칙인 비차별원칙은 WTO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WTO 회원국들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원산지과 상관이 없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본 조는 수입품과 국산품(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과의 경쟁조건(condition of competition)이 동등하여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의미한다.

WTO TBT 협정은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한다는 전제로 포장, 표시 및 상품부착요건을 포함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서 작용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인정하는 원칙과 의무사항으로 준수함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3)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2: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by Central Government Bodies, 2.1 Members shall ensure that in respect of technical regulations, products imported from the territory of any Member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like products of national origin and to like products originating in any other country.

34)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2: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by Central Government Bodies, 2.7 Members shall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accepting as equivalent technical regulations of other Members, even if these regulations differ from their own, provided they are satisfied that these regulations adequately fulfil the objectives of their own regulations.

35) GATT체제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었던 비차별주의 원칙으로서 수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는 동종 국내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제2절 WTO TBT 협정의 따른 무역기술장벽의 주요 내용

1. 기술규정 및 표준³⁶⁾

기술표준은 규칙 지침이나 제품의 특성 또는 관련된 전문용어, 포장, 표지, 라벨링, 기호 또는 관련 공정과 생산 방법을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한 문서이다. 기술표준은 강제성이 없지만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실질적인 강제성을 갖게 되므로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강제 검사제도 운영표준의 인용 또는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무역기술장벽으로 변질된다.

1) 기술규정 채택의 일반원칙

각국들은 국제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제정하거나 운용하지 못하며, 또한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기술규정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무역 제한적인 효과를 갖게 되지만, 해당 기술규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객관적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무역 제한적인 결과는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자국의 기술규정이 타 회원국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며, 해당 기술규정을 공포한 후 동 규정을 관련 회원국들에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또한 기술규정은 그 규정을 더 이상 채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덜 무역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2) 국제표준의 활용

기술규정 채택의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있어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지 않는 한 관련된 국제표준을 기초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국제표준에 따라 자국의 기술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들은 국제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36) 진소비, “외국의 대중국상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1.

3) 외국 기술규정의 동등성

회원국은 타 회원국들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타 회원국들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도 동등한 것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통보

특정국가에서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개발하였을 때 관련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되는 국제표준이 존재치 않거나 국제표준의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달라서 타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국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간행물에 공표하여야 하고, WTO 사무국을 통해 타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안보 보건과 환경에 관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기술규정의 공표 및 실제 적용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시차를 두어 수출국, 그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의 수출업자가 생산방법이나 제품을 수입국의 요건에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입상품의 방법, 행정절차, 수수료, 검사조건 등에 있어서도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검사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 시정될 수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³⁷⁾.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성판정절차

적합판정절차란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관련 요건 등이 충족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절차를 뜻한다. WTO TBT협정의 규정 적합판정절차는 검사와 합격보증, 견본검사, 측정, 인증 기준, 상표등록 및 각 항목조합을 포함한다.

현재 국제에 관한 안전체계가 주로 4가지 있다. 미국의 UL인증, 유럽의 유럽지령과 표준(CE), 일본의 JIS인증, 캐나다의 CSA인증이다³⁸⁾.

37) 이신규, 전계서, 2011, pp.185-186.

38) 宋波 夏廷, 전계서, 2006.

1) 일반원칙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적합판정절차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회원국의 영토가 원산지인 동종 상품의 공급자가 자국에서 생산이 된 동종 상품 또는 여타 타 국가가 원산지인 동종 상품의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그 절차에 대한 접근성에 대하여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적합성판정절차는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가 초래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한다.

2) 적합성판정절차의 운용

적합성판정절차의 운용에 있어 원산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적합성판정절차의 표준 처리기간이 공표되어야 하며, 만약 회원국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상처리기간이 통보되어야 한다.

적합성판정절차를 받은 후에 상품의 명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품에 관한 적합성판정절차는 해당 상품의 적합성이 여전히 유지되는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도에만 그쳐야 한다. 이것은 상품의 세부 명세가 변경이 될 때마다 적합성판정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이유이다.

만약 적합성판정절차의 운용에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무기관에 이의를 신청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상호인정

WTO TBT협정은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적합성판정절차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에서는 상호인정제도가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 체결되어 있어서 무역기술장벽(TBT)을 낮추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호인정은 타 회원국의 적합성판정절차가 자국의 판정절차와는 다르더라도 타 회원국의 절차가 자국의 절차에 상응되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관한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다면 상대국 적합성판정절차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기업

의 입장에서는 상대국 시장진출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시장 확대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³⁹⁾.

대부분의 상호인정은 실질적으로 제품의 안전기술에 관한 법률(law and regulation)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수준의 인정을 말한다. ISO/IEC7000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는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요원 또는 기관에 관한 규정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중립적인 제3자인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에 위탁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절차 수준에서 상호인정이 가능하게 되면 수출기업은 상대국의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CAB)에서 시험·인증절차를 마치고 즉시 수출하게 되며, 수입국에서 시험·인증절차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경감하여 무역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인증결과에 대해서 외국정부는 국내에서 실시된 적합성평가와 동일한 것으로 무조건 수용하여야 한다.

상호인정에 합의한 양국은 당해 제품을 이미 수입국내의 기준·인증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수입품을 국내시장에 추가요건 없이 유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BT협정 제2.7조에서는 “회원국은 자국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합성평가 절차의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TBT협정 제6.1조 및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호인정제도는 WTO에서도 장려하는 정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WTO정합성(WTO-consistency)이 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상호인정에 합의한 경우 이러한 이익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동종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에도 공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혜국대우(MFN)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TBT협정 제2.1조도 GATT 제1조와 문구는 다르지만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WTO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GATT 제24조를 원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제3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국의 적합성평가절차에 따른 보증을 자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상호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9) 엽소령, 전게서, 2015.

3. 정보 및 기술지원

모든 회원국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정부기관이 제안 또는 채택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에 대하여 타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게 1개 또는 여러개의 질의처(Enquiry point)를 두도록 하였다. 회원국이 무역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판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타 국가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 회원국이 합의내용 및 그 대상품목을 사무국을 통해 타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에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통보를 접수한 경우 그 사본을 모든 회원국 및 관련 국제표준기관, 적합성판정절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4. 공정관행규약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비정부기관이 WTO TBT협정에 있는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공정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준수하게 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정관행규약은 표준에 대한 규약으로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등에 관계가 없이 WTO TBT협정 회원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표준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기관은 자발적으로 이에 대한 규약을 수용할 수가 있다. 공정관행 규약의 행정업무는 WTO사무국이 아닌 제네바에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ISO/IEC)정보센터에서 담당한다. 공정관행규약에서도 무역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금지,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등 비 차별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국제표준에 대한 준수 의무 및 표준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외형적 특성이나 도안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요건에 따라서 표준을 제정할 의무 등도 적용이 된다.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에서는 자국 내 다른 표준기관 또는 자국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및 지역 표준기관들과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지역표준기관은 국제표준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⁴⁰⁾.

40) 진소비, 전게서, 2013.

5. 분쟁 해결

WTO 기술 장벽 협정의 운영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문제의 협의를 위하여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반, 기술전문가그룹 및 조사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특정 국가가 협정과 관련해 자국의 이익이 침해 또는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대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국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사회의를 소집한다. 만약 위원회에서도 해결을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검토를 위해 기술전문가그룹을 설치하고, 동 그룹은 사실을 조사해 위원회에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면 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은 기술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가능한 설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게 보고한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및 판정하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관계당사국에 통보한다⁴¹⁾.

6. 개도국 우대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인증 및 검사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개도국의 개발, 재정과 무역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도국의 수출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 비록 국제표준이 있더라도 개도국의 특수한 기술적 및 사회적 조건과 경제개발을 위해서 토착기술 및 생산방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도국의 사정에는 적합치 않은 국제표준 사용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인증 및 검사제도가 개도국의 수출증대 및 시장다변화에 장애가 되지 않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41) 이신규, 전계서, 2011, pp.186-189.

제4장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제1절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황

1.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주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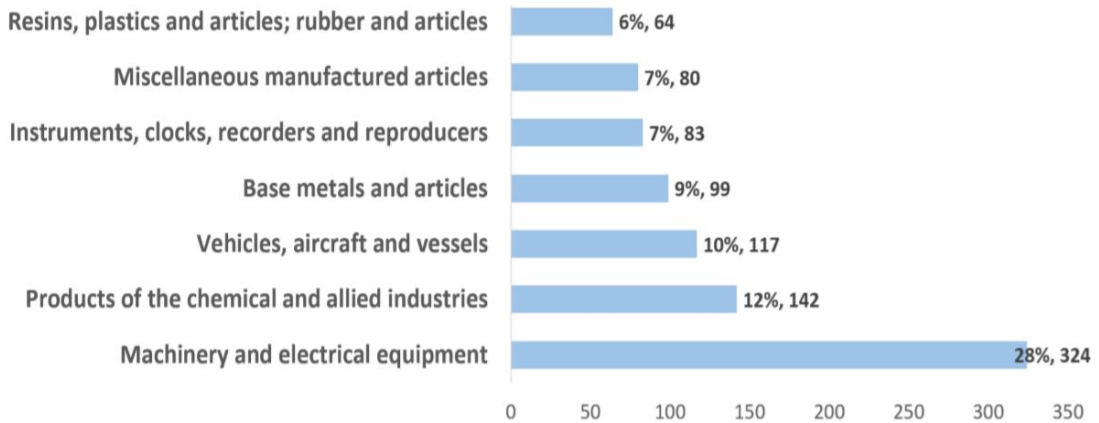
중국은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저렴한 이점 및 풍부한 천연자원들로 인해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해왔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중간재의 상대적인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저렴하며,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으므로 한국기업들에게는 비중이 있는 교역 대상국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에 맞춰 국제기구에 자국의 기술 표준을 부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신규 기술 규제 도입과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중국은 WTO 회원국 중에서 기술 규제 통보 건수가 제일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⁴²⁾.

무역기술장벽은 FTA 협상 시 중요 쟁점이기도 하거니와 기술무역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알아본 후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42) 전우진, 전계서, 2015, pp.1-81.

<그림 4-1> 중국의 2002년~2014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자료 : WTO, I-TIP.

1) 무선랜암호화표준(WAPI)

중국정부는 2004년 5월 국제표준과 호환성이 없는 독자적인 무선랜암호화표준 WAPI(Wireless LAN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를 제정하였으며, 그 해 12월부터 중국 내에서 무선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WAPI는 중국의 무선랜 암호화 표준이며, 새로운 WAPI암호코드의 배포권한을 정부가 지정한 11개 중국 업체들에게 독점시킴으로써 외국 업체는 이 WAPI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기업과의 라이선스 협약을 맺도록 하였다.

2)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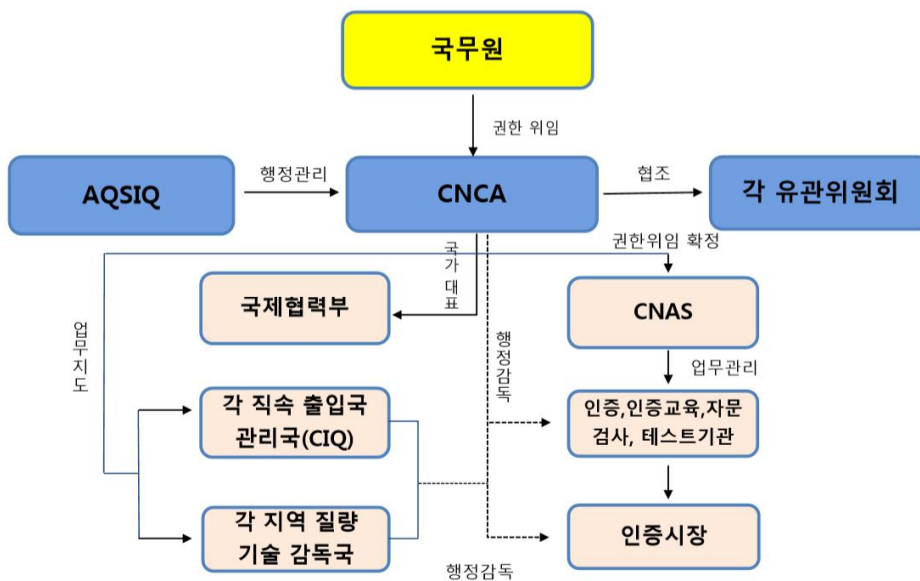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및 무역확대, 시장경제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의 추세를 반영해서 강제인증제도인 CCC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 실시하는 강제성을 띤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중국 내의 생산이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은 중국 정부에서 지정된 제품에 한하여 반드시 CCC 인증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그에 따라 CCC 인증 마크 부착을 하여야만 중국 내에 유통·판매와 수입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기술장벽이다.

중국의 강제인증 및 자발적 인증을 규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의 시행

령으로 중국 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제반 활동(신청, 제품 검사, 공장 심사,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에 적용되며, 강제인증을 제외하고 중국내의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인증제도로써 해외 인증(KS, CE, UL, KC 등)도 포함된다.

중국의 자발적 인증제도 강화는 중국 진출 외국 인증기관의 사업 제한과 자격 요건의 강화로 인해 중국 내 인증활동이 어려워지며, 운영비용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 내에 인증기관을 설립해야만 중국 내 공장실사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림 4-2> 중국의 인증조직기구



자료 : 김주연, “중국 CCC 강제인증 획득 절차”, 해외인증기술교육 및 인증획득 성공사례 세미나, KITA, 2014.

CCC제도는 법으로 규정된 강제성 안전 인증제도로써 중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관련 협의 및 국제통행규칙에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 신변, 재산, 안전, 환경, 국가안전, 동식물의 삶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제품합격평정제도이다.

현재 22개 분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유리,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전선, 의료기기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 강제대상 품목에 포함된 모든 제품은 반드시 CCC인증을 받고 CCC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 가능하며, 인증 미취득시에는 중국내 판매 및 수입, 출고 및 통관이 거절된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명기된 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인증획득 후에 마크 미부착시

행정처벌과 형사책임을 요한다.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 품목 변경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관련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 적합성 평가기관과 검사 기관에는 관련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인증 절차가 오래 걸리고 있다.

이런 인증제도는 국제 표준을 획득한 공장이라도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 획득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가 많으므로 기업 비밀이 침해된 우려도 있으며, 중국이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에서 실시한 공장 실사 결과의 적용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CCC인증의 취득 소요기간이 6개월~1년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수출기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CCC제도 절차는 신청, 접수, 서류심사, 제품검사, 공장심사, 공장시료 채취 검사, 평가로 총 6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인증서는 심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발급된다.

<그림 4-3> CCC 인증 절차



* CCC 획득 소요 기간: 약 90 Working Days

(제품별 상이 / 테스트 및 공장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자료 : 김주연, “중국 CCC 강제인증 획득 절차”, 해외인증기술교육 및 인증획득 성공사례 세미나, KITA, 2014.

<표 4-1> 강제 인증 및 라벨링 제도

명칭	대상	주관기관
강제성제품인증 (CCC)	소방용품, 전기전자제품, 공안제품 등	시장총국
에너지효율라벨링	가전제품 및 관련 전자제품	시장총국
위생허가	의료기기, 보건식품, 의약품, 화장품	중국식품약품관리총국
물효율라벨링	물 사용 제품(세척기기, 수전용품 등)	시장총국
무선관리인증 (SRRC)	특정 무선 및 소출력 무선기기	데이터산업부
China RoHS	중국 유해물질 규제에 해당되는 전자제품	공업신식화부
통신설비진망허가 (NAL)	통신망 연결 단말기	국무원
특종설비제조허가 (SEL)	특수용 설비 및 제품(각종 압력용기)	시장총국
방폭인증 (NEPSI)	전기기기, 조명 연료 주입기, 방폭 가정용 기기 등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자료 : 김민지, 김태환,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 품목별 무역기술장벽(TBT) 관리방안 연구”, 통상정보 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 p.37.

3) China RoHS(Restriction of Substances)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들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며, 전자정보제품의 폐기 이후에 유발이 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규제(RoHS)의 영향을 받아서 200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조치로써 IT 제품에 의한 오염을 통제 및 감축, IT산업의 지속가능 발전 증진, 자원 절약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6대 유해물질인 카드뮴(Cd), 납(Pb), 6가크롬(Cr+6), 수은(Hg) 등의 주요 중금속물질 및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등 IT제품에 포함되는 6개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일단 시장에 진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은 함유된 유독물 성분, 환경 보호를 위한 사용기한, 회수가능 여부 등을 표시한 라벨이나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유해물 관리를 CCC제도의 전단계인 자발적 인증제도 또는 자기적 합성선언을 의무화 하였고, 마지막으로 동

제품의 생산 및 설계과정 중 환경보호 및 재활용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였다⁴³⁾.

China RoHS의 근거법률인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은 공업정보화부,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공상행정 관리국, 국가 환경보호총국,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China RoHS의 경우 EU의 RoHS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산업표준이나 국가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EU의 RoHS에 비해서 누락된 품목이 많으므로 국제 기술 수준에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아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보완이 요구되는 조항이다.

<표 4-2> China RoHS 적용 대상범위

구분	적용 여부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중국내수	적용
제품, 부품 수입시	적용
부품수입 → 중국내 조립 → 제품수출	미적용
제품, 부품 수출시	미적용

자료: KOTRA, 국가정보, 2013.

4) 신화학물질 환경 관리제도(China REACH)

중국은 EU가 REACH를 실시하는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자 의견수렴 및 개정을 거쳐 2010년에 중국 국무원에서 동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신화학물질 환경 관리 제도는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EU의 REACH와 거의 유사하다.

China RoHS는 EU의 REACH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된 것으로서 중국 내 또는 중국으로 수입이 되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 및 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서 등록이나 평가 등에 제한을 받게 하는 화합물 규정이다. 이는 역내 기업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만약 미등록시에는 역내시장 진입금지되며, 신고 화학물질이 인체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보를 담은 위해성평가보고서 및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 수입, 가공, 제조 등으로 사용되는 신규 화학물질로서 물품(완제품)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이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EU의 REACH 자발적인 신고 제도와는 달리 China REACH의 경우에는 신

43) 이찬우,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2, p.140.

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신규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화학물질에 관한 추가적인 등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추가비용의 발생에 따른 원가 상승의 압박 가중이 예상되므로 외국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써 작용될 여지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학과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원료 및 제품의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고, 신규 화학물질이 포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EU의 REACH의 내용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4-3>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와 EU REACH의 비교

구분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EU REACH제도
시행일	- 2010년 10월 15일	- 2007년 6월 1일
대상물질	- 신규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
의무자	- 제조자, 수입자	- 역내 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시험기관	- 국외의 경우 GLP인증기관 - 환경보호부 지정 중국내 시험기관	- 국제공인분석기관 자료 인정
분류톤수	- 1톤 미만, 1톤 이상, 100kg미만	- 1, 10, 100, 1000톤 이상
위해성 관리대책	- 1톤 이상 등록자, 가공자, 사용자, 는 등록증 규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 대책의 수립 의무	- 10톤 이상 등록 신화학물질 안전성보고서(CSR)제출
벌금/제재	- 신고/등록되지 않으면 중국 역내에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금지 -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 벌금 부과	- 등록되지 않으면 EU 역내에서 제조 또는 시장 출시 불가
기타	- 일반신규, 위험신규, 중점환경관리위험신규화학물질로 구분 - 취급량 1톤 미만일 경우 간이신고, 특별간이신고 가능 - 공동신고 가능	-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으로 구분

자료 : 장현숙,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Focus, 제9권 19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pp.8-10.

5)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중국의 제품안전 자율인증 기업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자율인증으로서 제품안전 신뢰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기술 장애를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선호되는 제도이다. CCC 강제인증 대상품인 경우 CQC를 획득하면 CCC인증의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2. 중국의 기술규제와 WTO TBT 협정의 비교

1) 기술규정 및 표준의 불명확성

기술규정 및 표준은 WTO TBT협정의 규정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규정은 강제성을 갖는 규정이고⁴⁴⁾, 표준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비강제적 수단이다⁴⁵⁾. 중국은 기술 및 관련규제 「표준화법」에서 표준을 강제표준과 추천표준으로 구분하였다. 강제표준은 WTO TBT협정 기술규정의 정의와 비슷하며, 추천표준은 표준의 정의와 같다. 이러한 표준 구분의 상황 아래에서 WTO TBT협정에 규정된 기술규정과 표준의 상호관계가 불명확하며, 실행과정 역시 각각의 독립적인 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제품관리에 관하여 규정된 기술표준 및 제품 생산기술 등 세부사항에 규정되는 표준의 연결성 역시 부족하다. 특히 중국은 어떤 제품에 관하여 명확한 관리규정을 발표하지만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기술표준이나 검역 방법이 부족하다⁴⁶⁾.

2) 기술규정 및 표준 제정의 결여

회원국 사이의 TBT에 관련된 모든 일은 WTO TBT협정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기술규정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지방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에 같이 적용한다.

중국의 기술규제 제정 과정은 지방입법과 중앙입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본정치제도, 국가주권, 공민기본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중대 사항은 인민대

44) WTO/TBT 부속서 1제1조.

45) WTO/TBT 부속서 1제1조.

46) 魏錦, 「中國技術法規建設和標準體質改革淺析」, 冶金標準化質量第6期, 2002, p.31.

표대회에서 제정하였으며, 지방정부는 지방 상황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에서 규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지역마다 경제실력, 사회문화 환경, 자연조건 등 차이점에 있으며,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마다 제정되는 기술규제는 서로 차이점이 있으므로 중앙입법 및 지방입법, 사업간, 지역간의 입법 충돌은 쉽게 초래되었다.

또한 중국의 표준 제정과정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은 서로 차이점이 많으며, 각 표준이 서로 교차, 반복, 대립된 사항이 많다.

3) 투명성의 부족

WTO TBT협정 부속서3에서는 회원국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에 대하여 통보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C항에 따라 “일반규정에 대하여 수락하였거나 이 규정으로부터 탈퇴한 표준기관들은 체내바에 소재한 국제표준화기구 위원회 정보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J항에서 “표준기관은 최소한 매 6개월마다 자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 중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을 공표한다.”

중국의 가입협상 시에 기준 회원국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우려사항 중 하나는 보조금을 포함한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에 관한 지적이었다. 즉 중앙부처 및 지방당국 등에서 제정한 규정에 관한 접근의 제한, 정보 통보, 언어 문제의 불충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여타 회원국, 기업, 개인의 접근이 가능한 공표되어 있는 무역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의 조치만 시행할 것이고, 타 회원국이 요청한다면 관련 법규 및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공개를 할 것이라 약속하였다⁴⁷⁾.

4) 선진국과의 차이

WTO TBT협정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부분 규제가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하여 시작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규정을 많이 참조했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선진국에서 실행된 규정을 참조해왔다.

중국은 IT 제품에 의한 오염의 통제를 목적으로 EU의 RoHS를 수정하여 실행 China RoHS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 방법은 RoHS와 유사하지만 RoHS 대

47) 엽소령, 전게서, 2015, pp.14-78.

상 품목에서 누락된 품목이 있고 구체적인 국가표준이나 산업표준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또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수입 또는 CNCA의 CCC인증을 받아야 할 때 SAIQ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준 및 방법이 특정화 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 기준 및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서 불투명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제2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

1. 기술규정 및 표준화 제도의 비효율성

회원국 간 TBT관련의 사안은 위원회에서 처리되며, 회원국내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비정부 기관에도 협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규제의 제정은 지방정부와 중앙이 동시에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주권, 국민의 기본권리 및 의무, 정치제도와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항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 상황에 의해서 인민대표대회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정 할 수 있다.

자연조건,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능력 등 차이에 따라서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기술규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산업간, 지역간의 기술규정 간 충돌은 쉽게 초래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표준 제정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국가표준, 지역표준, 산업표준은 서로 차이점이 많으며, 각 표준은 서로 교차, 반복, 대립되는 사항이 많다. 더군다나 그 절차 또한 까다로워서 표준화 제도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⁴⁸⁾.

2. 적합성평가의 불명확성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 자의적인 적합성평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표준의 경우에서도 표준화 보급을 위하여 적합성 평가 활동은 도입되어야 하지만 자체적인 특별한 업무 기능을 이용해 이익 추구형 적합성 평가가 행해지면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인해 적합성 평가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⁴⁹⁾.

48) 유왕위, “중국 기술무역장벽(TBT) 조사를 통한 중국 수출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20-40.

49) 박혜숙·윤인찬·조남호, “중국의 표준화 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경 영시스템학회지”, 제25권: 제6호, 2002, p.66.

3. 투명성의 부족

TBT협정 부속서 3에서 회원국들이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하여 통보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부속서 제 C항에 따라 "일반규정에 대하여 수락하였거나 이 규정으로부터 탈퇴한 표준기관들은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표준화기구위원회 정보 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⁵⁰⁾." 또한 제J항에서 "표준기관은 최소한 매 6개월마다 자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 중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되는 작업 계획을 공표한다."⁵¹⁾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 시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우려사항 중 하나가 보조금을 포함한 중국의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즉 중앙부처와 지방당국 등이 제정한 규정에 대한 접근의 제한, 언어 문제, 정보 통보의 불충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여타 회원국, 개인, 기업의 접근이 가능한, 공표된 무역 관련 법률, 규정 등의 조치만 시행할 것이며, 타 회원국이 요청하면 관련 법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공개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술규제 와 표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통보가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비정부 기관에서 제정된 규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문서를 내부만 유통하여 외부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들이 자기 지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표준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교역 상대국들이 중국의 TBT 관련 규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문제시하고 있다. 투명성 부족 문제는 제정 또는 개정 된 기술규제조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합리적인 적용기간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한다⁵²⁾.

4.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중국은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국제표준의 채택률은 상당히 낮으며, 선진국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성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50) TBT Agreement Annex 3C. "Standardizing bodies that have accepted or withdrawn from this Code shall notify this fact to the ISO/IEC Information Centre in Geneva"

51) TBT Agreement Annex 3J. "At least once every six months, the standardizing body shall publish a work programme containing its name and address, the standards it is currently preparing and the standards which it has adopted in the preceding period"

52) 趙賢淑, "中國의貿易技術障壁的問題點과 改善方案", 圓光大學校., 經營大學, 國際 通1商學部, 2015, pp.85-87.

에서 IT 제품의 낭비에 의한 오염 통제 및 감축, 그리고 자원절약과 IT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을 목적으로 실행된 China RoHS는 EU의 RoHS를 기반에 두고 이를 수정 및 실시하였다.

그런데 China RoHS의 시행이 장기적인 목표로는 국내 자연환경의 개선 및 산업구조의 개편이며, 단기적으로는 EU의 조치에 대하여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는 하였지만 EU의 RoHS 대상 품목에서 누락된 품목들이 있고, 구체적인 산업표준 및 국가표준이 없으며, 국제 기술수준에 비하여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⁵³⁾.

또한 수입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수입 또는 CCC인증을 받는 경우 SAIQ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방법 및 기준이 특정화 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기준이나 국제 기술수준 등에 비해서 불투명하다⁵⁴⁾.

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54) 박주희, 전게서, pp.1-22.

제3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방안

1) 국제적인 기술규제 및 표준 관련 법규 등의 마련 및 정비

TBT협정 이후에 각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우위 확보 및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표준화 활동을 강조하였고,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최선의 활동을 있다. 국제 표준 제정에 있어 국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이 될 수 있는 원천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제 표준의 선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표준개발이 시급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국제표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제표준은 국가 간 무역이 자유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유사 제품 간의 빈번한 접촉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과 범위가 커지고 있다. 국제표준은 무역기술장벽 협정문에 근거하여 관련된 내용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표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무역기술장벽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한다면 국내 산업화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장 진출의 시간 단축 및 시장 확대의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⁵⁵⁾.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기술규제의 개념에 대해 권위 있는 전문담당기관이나 관련 문서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중국의 기술규정은 표준화법에 따라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의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며, 약 3만 2천종의 국가표준을 운용하고 있다. 각각의 표준은 업종표준화관리기구, 국가표준화관리기구, 기업표준화기구, 지방표준관리기구에서 관리한다.

국가표준은 시행에 있어 강제성유무에 따라 강제표준과 권고표준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과 인증의 많은 부분이 중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율인증인 경우에도 중국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시 장벽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교역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규제에 대해 명백하게 구분 및 기술하여야 하며, 법적 지위의 부여를 하여야 한다. 현행의 기술규제에 일치하지 않는 부문들

55) 선아름, 나희량,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對미국 전기전자 품목 수출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2015, p.230.

은 수정 및 폐지하여 실제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기술규제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⁵⁶⁾.

중국정부는 무엇보다 건전한 제품 표준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은 기존 제품의 기술 표준 체계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 이를 개선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품의 평균 성장 주기가 너무 길며, 노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술표준은 시장 수요와 과학 기술 진보의 발전 소득을 심각하게 따라가지 못한다.

제품 표준 체계도 혼란스러우면서 등급 역시 분명하지 않고, 또한 서로 중복 교차하는 현상이 존재하므로 표준 체계 구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표준 제정의 기술적 수준이 낮으며, 기술 매개 변수 설정이 불합리하는 등 국제 선진의 기술 표준과는 많은 분야에서 괴리되어 있다. 이는 중국 기술 표준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표준이 규정하는 기준이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였다.

중국의 생산 수준 및 측정 검사가 상용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의 성공 사례와 성숙한 경험을 참고하여 건전한 기술, 업계, 표준 체계를 건립하여야 한다. 표준의 제정 및 실시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기업, 소비자, 산업 협회의 요구를 청취하며, 정기적으로 산업 업종의 표준을 공개하며, 수출 기업과 산업 협회가 정보를 수집하여 소모하는 원가를 줄여야 할 것이다⁵⁷⁾.

또한 효율적인 직능을 발휘해서 국제와 연결하는 효율성과 융통성이 높고 통일된 인증체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WTO요구에 의해 통일한 표준, 통일한 인증목차, 통일한 인증마크, 기술법규 및 적합성평가 등의 체제를 촉진해야 한다.

2) 특정무역현안 활용

조치국에 대한 우려표명이나 의견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국이 당해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를 통한 양국간 협상에서 직접 우려표명이나 의견제시를 하거나 TBT위원회에서 당해조치를 특정무역현안(STC) 으로 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TBT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에 대해서는 우려표명국은 WTO사무국에 TBT위원

56) 조현숙, 전계서, 2015, p.87.

57) 악단, 김면복, 박형래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7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17, pp.100-117.

회의 14일전까지 STC를 등록하고, 10일전까지 등록된 STC가 회원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제5차 TBT협정 3년 주기 검토보고서). TBT위원회의 결과는 상세한 회의록이 WTO웹사이트에 공표되며, 통상적으로 제네바에서 매년 3회 개최(3월, 6월, 1월)되기 때문에 보호주의적인 당해조치의 시정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등에 의한 보호주의적인 시정조치의 장으로서 특정무역현안(STC)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히려 2008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이후 신흥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TBT위원회를 통한 보호주의적 조치의 시정은, 규정에 따라 무역당사국간의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장소로서 정치문제화하지 않고 상대국의 조치를 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TBT위원회에서는 국내규제의 책정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국의 시정에 대응하기 쉬우며, 상대국내에서 무역당국에 대하여 규제당국의 설명책임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는 자발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지역주의 협정의 활용

지지부진한 다자주의 협상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역시 그 추동력을 잃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역기술장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TA와 같은 양자 간 또는 지역주의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미 합의되어 있는 상호인정약정 외에도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및 공동 사업을 더욱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중국은 주요 수출대상국들에게서 발생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무역의 이익 및 후생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품질 인증체계 및 적합판정절차의 신뢰성 확보

중국의 품질 인증체계는 인증절차가 복잡하며, 효율이 낮은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적합판정절차 시스템을 정리해야 하며, 적극적인 인증 작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적합판정절차 분쟁해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⁵⁸⁾.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자 인증을 강화해 무역 마찰을 줄이며,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제기구의 표준 설정 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전자 상거래와 관련되는 무역 표준을 수립하고 ISO14000 및 ISO9000 인증을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⁵⁹⁾.

5)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TBT협정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대우를 실현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TBT협정에 대한 연구를 중시해야 된다. 또한 WTO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산업계에서는 상대국으로부터의 관계악화 등 직접적인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요인도 제거할 수 있으며, 당해국의 추가적인 규제조치나 제3국의 유사한 무역제한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그러나 WTO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는 국가이므로 개별기업이나 업계는 직접 WTO 분쟁해결기관(DSB)에 제소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산업계에서는 산업피해에 대한 정보 및 업계에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WTO분쟁해결절차는 수출기업의 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협정 위반이 된 통상규제조치를 원상회복시켜 국제통상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WTO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협의단계에서 2-3개월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WTO의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어도 패널보고서의 효력은 향후 규제조치의 개선 등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갖게 됨으로 소급적인 금전적 구제는 별도로 상대국의 국내재판 등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최근 많은 FTA에서는 비관세장벽이나 TBT분쟁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알선·조정·중재 등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거나 FTA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TBT분쟁에 대하여 WTO분쟁해결절차나 FTA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대신 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제3자를 조정인으로 임명하여 당해 분쟁해결을 도모하면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은 통상법리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WTO협정을 약화시키거

58) 엽소령, 전게서, 2015.

59) 리위안루, 전게서, 2019, pp.9-60.

나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마다 상이한 무역기술통제에 대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된다.

6) 통상전문인력 양성 및 대응능력 강화

국가 간의 기술교류 증진 및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표준 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산·학·연의 연계를 통하여 전문가 집단을 양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 통상전문가, 협상전문가,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BT 전담부서가 필요하다⁶⁰⁾.

WTO 회원국들은 WTO의 TBT협정에 의해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술규제의 도입에 관하여 사전통보 및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TBT위원회에 통보된 WTO회원국들의 기술규제에 관련된 통보들은 긴급하게 시행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안들로서 다자간 논의의 마지막 관문이 TBT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해 주요 통보문의 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국내적인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⁶¹⁾.

7) 무역기술장벽의 이해와 예방

각국의 표준화는 대부분 자국의 국내적인 목적 및 필요에 의하여 설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국가들 간 상이한 제도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술 장벽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협정상 특정 기술규제가 정당한 목적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관련 WTO 규정 위배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 부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규제는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며, 서로 다른 원산지국가의 상품 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때 무역장벽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규제가 부정적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술규제는 제품에 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제품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무역원활화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⁶²⁾.

60) 박주희, 전게서, 2016, pp.5-65.

61) 손진걸, 전게서, 2010, pp.53-54.

8) 투명성 확보 및 관리 메커니즘 수립

기술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 관련 당국의 WTO 의무이행에 관한 의지가 필요하다.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제정은 무역을 저해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지 않게 TBT협정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⁶³⁾.

정보수집 결과 조치국에 대한 우려표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TBT통보기간 내에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주요한 대응방법이 된다. 회원국중에는 공식적인 의견제시(public comment)에 있어서 투자자(stakeholder)로부터 의견을 수집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와 병행하여 TBT통보에의 의견제시가 가능한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다. TBT회원국은 TBT통보에 대한 의견제시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의견제시는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업계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제시는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으며, 최초의 의견 제시 후에도 개선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TBT협정의 국제규칙에 따라 매년 그 내용을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협정에 관한 의무는 WTO 회원국들 간에 국가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의견교류 및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기술규제의 표준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다자주의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기술규제 설정 통보는 또 다른 무역장벽에 관한 합법적인 허가를 의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세장벽의 일환인 무역기술장벽은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의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⁶⁴⁾.

2. 기업의 대응방안

1) 표준화에 대한 인식 재고 및 품질 인증제도 활용

기업은 자체의 기술 표준화 의식을 강화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국제표준을 채용해 표준을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 하에서 기업들은 자주적으로 기발한 제품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인증 작업을 가속화, 제품

62)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100-150.

63) 유왕위, 전게서, 2017, pp.20-40.

64) 선아름, 나희량, 전게서, 2015, pp.205-239.

의 품질과 기술의 제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생산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고, 과학 연구 성과를 현실 생산에 활용하고, 표준 규범에 따른 연구 개발 생산 및 포장 운송, 판매 서비스 등의 각 부분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격 인증에는 제품 인증 및 시스템 인증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증들은 기업에 이윤과 기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국제 표준의 인증을 널리 시행하고, 기업 인증의 피복을 확대하여 그 제품이 국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해외규격 인증은 자국 내의 상품진입에 대하여 규제 수단으로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하므로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해외시장 기술정보 수집 등 자체 역량 강화의 노력도 중요하다.

2) TBT협정의 활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수집

중국의 많은 제품들이 TBT를 자주 당하는 이유는 국제시장의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교역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에서 기술규제는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해 및 학습을 가속화하여 국제규칙을 파악하여야 한다.

TBT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조치의 내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WTO회원국은 자국의 웹사이트에서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병행하여 TBT정보의 유무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TBT통보는 WTO의 웹사이트에 모두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TBT통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TBT통보에는 기술규정안의 내용, 목적, 대상제품, 시행예정일, 관련법령 등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TBT통보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자사에 대하여 당해 기술규정안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시장전략 수립

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각종 해외자료수집과 함께 신개발제

품에 관한 시험규격을 신속히 입수해서 분석하는 등 시장의 기술정보관리 및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품의 개발시에는 기술의 실시, 제품의 품질, 포장, 생산 설비 등 모든 방면에서 경쟁력 있도록 시장전쟁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무역 지리 구조와 수출시장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장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제품 구조를 개선하며, 전자무역 체계를 건립하는 것에 힘쓰고, 해당된 규정을 제정하여 기업의 경쟁 행위 및 산업 방향을 인도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기업은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의 이익 및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또한 바이어의 요구에 기반해 해외규격에도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이어의 환경에 맞는 신제품의 개발은 다른 경쟁업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은 물론, 시행착오 역시 줄일 수 있는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또한 CEO는 글로벌마케팅 역량 강화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기업이미지 쇄신을 통해 다양한 유통망 구조에 참여하여야 하며, CEO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하여 학습 병행과 함께 일류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하여야 한다⁶⁵⁾.

5) 다양한 수단을 통한 해외 경영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역기술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간접투자, 직접투자 등 방식을 취하고 해외경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독자, 합작, 투자,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영 규모를 발전시킴으로써 관련 산업이 무역기술장벽에 피하는 것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생산표준, 판매경로, 브랜드는 유효히 무역기술장벽을 피할 수 있다.

기업은 합작, 독자 생산 기업의 형식을 개업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 연구 센터 설

65) 손진걸, 전계서, 2010, pp.53-54.

립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곳에서 인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국제소비추세를 따라 자금 원료도 이용할 수 있다.

3. 산업협회의 대응방안

1) 산업 협회의 관리 감독 강화

중국의 기술표준을 대부분 정부 기구와 해당된 품질 부문으로 제정하였고, 품질 인증 기구 및 업자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 기능이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압력이 지나치게 크며, 기술규정 및 기술표준의 제정이 기술 수준의 발전을 따라 갱신될 수 없고, 또한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협회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통일적인 산업 표준 및 기술규정

제품의 품질 표준을 제정할 경우 각 산업 협회에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국제표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의 각종 산업기준 및 지방의 표준이 국제일반 표준에 통합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 각 협회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되며, 각 산업 표준의 제정 및 관리 분야에서 그들의 우세를 발휘하여야 한다.

3) 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대응수단 제공

업무 중개 조직은 기업의 조직, 정보의 지지 등의 측면에서 기업과 정부를 대체할 수 없는 역할 발휘 및 무역 장벽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이 기술 무역장벽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정보 수집 및 전달, 조화의 작용을 적극 발휘하여야 하고, 글로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각 주요 무역국들의 기술적 장벽 동태의 변화를 신속하게 추적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들에게 최신의 업계 정보를 피드백하고, 업계 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및 포장 운송 등 부문의 선진 기술성과를 널리 보급하여 국내 산업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 협회는 기업 대표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무역에 관련된 요구 및 의견을 제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연결다리로서 정부 주관 부서 및 기업 간 소통을 조정하여 제때에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를 정부 상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부에 협조하여 더 과학적으로 대외 무역 정책을 제정하여 TBT무역 장벽에 효율적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⁶⁶⁾.

66) 박형라, “기술적 무역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7, p.294.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최근세계 무역통상환경은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및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확립 등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의 증가로 인해 자유무역의 장애물이었던 관세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무역의 크기 확대 및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전통적 무역규제였던 관세장벽이 점차 줄면서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자국 산업의 자립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다양한 형태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제품의 품질 보증,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의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제품품질의 인증제도 및 기술표준을 도입하면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증가하였고, 각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무역기술장벽의 형식을 계속하여 개발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이 중국의 수출무역에 관한 제약 효과가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에서 있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TO TBT협정의 특성 및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중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장애요인 및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무역에 대한 TBT협정의 체결배경과 함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정부, 중국기업,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규정 및 표준화 제도의 비효율성이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산업간, 지역간의 기술규정 간 충돌은 쉽게 초래 될 수 있다.

둘째, 적합성평가의 불명확성이다.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 자의적인 적합성평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투명성의 부족이다. 중앙부처와 지방당국 등에서 제정한 규정에 대한 언어 문제, 정보 통보의 불충분, 접근의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국제기준과의 불일치이다. 중국은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국제표준의 채택률은 상당히 낮으며, 선진국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성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른 정부, 기업,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기술규제 및 표준 관련 법규 등의 마련 및 정비이다. 둘째, 특정무역 현안의 활용이다. 셋째, 지역주의 협정의 활용이다. 넷째, 품질 인증체계 및 적합판정 절차의 신뢰성 확보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다. 여섯째, 통상전문인력 양성 및 대응능력 강화이다. 일곱째, 무역기술장벽의 이해와 예방이다. 여덟째, 투명성 확보 및 관리 메커니즘 수립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품질 인증제도의 활용이다. 둘째, TBT협정의 활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수집이다. 셋째,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시장전략 수립이다. 넷째,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이다. 다섯째, 다양한 수단을 통한 해외 경영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협회의 관리 감독 강화이다. 둘째, 통일적인 산업 표준 및 기술규정이다. 셋째, 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대응수단 제공이다.

WTO TBT의 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간, 동식물의 생명, 환경, 안전, 기반적인 행위 방지를 위한 기술규정 및 표준을 지정하고 협정에 정하여 각국에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허용하고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위한 것이나 회원국의 의도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해석 및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투명성과 국제표준과의 일치성요건을 회피하여 자국상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술장벽을 악용하기도 한다.

기술규제가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서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 및 연구비 지급 확대와 함께 교육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안전제품에 대한 선호의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품의 표준 또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체계를 모두 통일시켜야 하며, 동시에 자국의 표준이 국제기준으로 확정되어 유리한 경쟁 환경을 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TBT위원회를 통해서 FTA TBT 규정을 보다 확실하게 개정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국의 국내표준을 세계표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준비 및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장벽에 관한 선제적인 대비를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규정 및 국제표준을 선점하여 무역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논문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의 내용 및 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중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문제점 및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무역에 대한 TBT협정의 체결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핀 후 중국정부, 중국기업, 산업협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대안 제시는 부족하였으므로 추후에는 기술적 측면 대안 제시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가기술표준원, “2016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2017, p.11.
- 권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한·EU, 한·중 FTA 비교연구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pp.28-29.
- 김민지, 김태환,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 품목별 무역기술장벽(TBT) 관리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 p.37.
- 김주연, “중국 CCC 강제인증 획득 절차”, 해외인증기술교육 및 인증획득 성공사례 세미나, KITA, 2014.
- 김철수, “TBT협정상 기술규제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3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7, pp.197-213.
-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100-150.
- 류한얼·성열용, “무역기술장벽과 한국의 대EU 투자 전략”, 산업연구원, 2017.
- 리위안루, “무역기술장벽 협정(TBT협정)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주요 선진국 완구 리콜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p.9-60.
- 박동준·강인선, “WTO/TBT협정에 따른 기술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생산성논집, 제23권 제4호, 2009, p.3.
- 박순애·탁현우, “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서울행정학회, 제23권 제4호, 2013, pp.81-102.
- 박주근, “WTO/TBT協定에서 標準의 調和와 透明性이 韓國貿易에 미치는 影響”,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2-28.
- 박주희,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5-65.
- 박형라, “기술적 무역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7, p.294.
- 박혜숙·윤인찬·조남호, “중국의 표준화 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경 영시

- 스텝학회지”, 제25권: 제6호, 2002, p.66.
- 백은영, “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통상정보학회, 2012, pp.1-23.
- 서민교·김희준, “한·중 FTA의 무역 기술 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통상정보학회, 2012, pp.491-516.
- 선아름, 나희량, “무역기술장벽(TBT)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2015, pp.205-239.
- 손진걸, “외국의 기술 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53-54.
- 약단, 김면복, 박형래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7권 제2호, 한국무역통상학회, 2017, pp.100-117.
- 안주석,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8-58.
- 엽소령, “기술무역장벽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4-78.
- 오선영, “WTO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TBT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47권, 2014, p.496.
- 왕상한, “WTO 뉴라운드와 무역기술장벽”, 신론사, 2003, pp.44-45.
- 유왕위, “중국 기술무역장벽(TBT) 조사를 통한 중국 수출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20-40.
- 이민아, “TBT협정과 환경 라벨링 제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1.
- 이석, “技術貿易障壁이 中國의 貿易에 미치는 影響 및 대응方案에 관한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7.
-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1, p.183.
- 이찬우,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2, p.140.
- 장현숙,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Focus, 제9권 19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pp.8-10.
- 전우진, “FTA 시대 한·중 기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81.

- 정민희, 무역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한-EU, 미국, 중국 FTA TBT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20-38.
- 조현숙,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학논총」, 제4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15, pp.72-94.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탈, WTO 무역기술장벽, 2012.
- 진소미, “외국의 대중국상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1.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p.25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2013.
- KOTRA, 국가정보, 2013.

【국외문헌】

- 魏錦, 「中國技術法規建設和標準體質改革淺析」, 冶金標準化質量第6期, 2002, p.31.
- 趙賢淑, “中國的貿易技術障壁的問題點과改善方案”, 圓光大學校, 經營大學, 國際通1商學部, 2015, pp.85-87.
- 何盛明. “財經大辭典：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0.